

##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

의안번호	제2026-07호	심의 · 의결 사항
심의·의결일자	2026. 3. 12.	
공개여부	공개	

###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「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 계획(안)

제 출 자	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
제출일자	2026. 3. 12.

#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「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 계획(안)

## <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개요 >

- ▶ (근거) 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에 관한 고시」
- ▶ (요건) ① 국회,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②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 ③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1/3 이상의 발의
- ▶ (절차)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 진행여부 심의·의결(45일 이내) → 절차 진행 및 처리 결과 통보(요청·관계기관) → 이행계획 제출(30일 이내, 관계기관)

## □ 추진 배경

- 국회·언론 등에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요청을 위한 **현행 국민 동의 요건이 과도하다**는 지적 지속 제기
  - ※ ('24년도 결산)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·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한 **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**가 있음('25.8.)
- 동의 요건을 **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완화**하기 위한 법률안도 기발의
  - ※ 국민 요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·조정의 **동의 요건을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(이하)의 범위로** 대통령령에 명시(강경숙 의원('25.9.), 김문수 의원('25.2.))
- 교육정책에 대한 **실질적인 국민 참여 기회 확대**를 위해 **요건 완화 필요**
  - ※ (대통령 업무보고, '25.12.)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서 **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** 등을 위해 **국민의견 수렴·조정 동의 요건 완화 추진**

## □ 개정 주요 내용

- (개정안) **현행 10만 명 이상 → 개정안 5만 명 이상**

### <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) >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<b>10만 명 이상</b> 인 경우를 말한다.	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b>5만 명 이상</b> -----.

-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확인을 위한 최소 수준의 기준 설정
-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국민의견으로 왜곡될 우려를 방지하고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논의 집중도 제고 가능

- ▶ (국회 국민동의청원)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
- ▶ (독일 연방의회청원) 연방의회 온라인 e-청원 플랫폼(*e-Petition*)을 통해 4주 내,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은 청원(퀴림)은 청원심사위원회 주관 공개 공청회 개최

## □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의견

☞ 국민 동의 요건을 5만 명으로 완화하되, 일정 수준 이상 동의자 수 달성 시 단계별 절차를 검토·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·운영하고,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경우 고시에 반영 추진(제11차 전문위 회의, '26.2.26.)

- 현행 기준(10만 명)을 일시에 완화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 필요
- 동의자 수를 완화한 이후에도 요건 충족 사례가 적을 수 있으므로 보완책 및 홍보 전략 필요
- 요건 미충족 시에도 동의자 수가 일정 수 이상(예: 1만 명) 도달한 경우 전문위에서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, 본위원회에 의견수렴을 제안하는 방안 검토

## □ 향후 추진일정(안)

-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 심의·의결(~3월)
- 입법예고, 관계기관 협의, 각종 사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(4~5월)
- 국무회의·차관회의 심의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(~6월)

붙임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**붙임**

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교육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는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바,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##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10만”을 “5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<u>10만</u>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만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00 - 3384

## □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할 수 있다.

1. 국회,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
3.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하기로 심의·의결한 경우

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·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·의결하고,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, 심의·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·조정절차의 진행여부,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,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

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**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**를 말한다.

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·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(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)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.

## I. 요청

- ① 국회,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②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 ③ 본위원회 재적위원 1/3이상의 발의

## II. 절차 진행여부 결정

- ① **(사전검토)** 국민의견수렴·조정 진행 여부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전문위원회가 사전검토 진행(요청일 기준 30일 이내)
- ② **(진행 여부 결정)** 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행 여부와 진행을 담당할 산하 위원회(담당위원회)를 심의·의결(요청일 기준 45일 이내)

## III. 절차 진행

- ① **(계획 수립)** 담당위원회는 의견수렴 방법·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제출(의결일 기준 30일 이내)하고, 위원회가 심의·의결(제출일 기준 14일 이내)
- ② **(의견수렴 및 조정안 제출)** 담당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(6~9개월) 후 결과(조정안)를 작성 및 위원회에 제출(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)
- ③ **(조정안 의결 및 통보)** 위원회는 ‘조정안’을 심의·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(조정안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)

## IV. 이행계획 제출·재심의

- ① **(재심의 요청)** 관계기관의 장 등은 조정안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(조정안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)
  - **(위원회 재심의)** 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를 검토할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, 재심의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 등에 통보(요청일 기준 60~90일 이내)
- ② **(이행계획 제출)** 관계기관의장 등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

## □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 요약표

단 계	처리기한	법령 내용	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에 관한 고시 (2023.12.28.)
I.요청		① 국회, 대통령,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 시 ②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이 10만명 이상인 경우 ③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	○ 국민의견 수렴·조정 개념 정의 ○ 기관·국민 요청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위원회 자체 결정시 발의 요건 구체화
II.절차 진행여부 결정	↓ 45일 이내 ↑	○ 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·의결	○ (30일 이내)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전문위원회에서 <b>사전검토</b> 실시 ○ 진행여부 결정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·조정을 담당할 <b>전문·특별위원회</b> (이하 담당위원회) 결정
III.절차 진행	↓ 30일 이내 ↑		○ 담당위원회는 위원회에 “ <b>국민의견 수렴·조정 계획</b> ” 수립·제출
	↓ 14일 이내 ↑		○ 위원회는 “국민의견 수렴·조정 계획” 심의·의결
	↓ 6개월 이내 (3개월 연장 가능) ↑		○ 담당위원회에서 <b>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 진행</b> ○ 추진현황 중간보고
	↓ 30일 이내 ↑		○ 절차 종료 후 담당위원회는 위원회에 “ <b>조정안</b> ” 작성·제출
	↓ 30일 이내 ↑	○ 의견수렴·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가 조정 여부를 심의·의결	○ 위원회는 “ <b>조정안</b> ”을 심의·의결
IV. 이행계획 제출 및 재심의	↓ 30일 이내 ↑	○ 관계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	
	↓ 60일 이내 (30일 연장 가능) ↑	○ 위원회는 재심의 후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재심의 결과 통보	○ (30일 이내) 재심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
	↓ 30일 이내 ↑	○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	